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96호

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「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0-66호, 2020. 3. 3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1년 3월 31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

1.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

가. 하한액 : 330천원

나. 상한액 : 5,240천원

2. 적용기간 : 2021년도 7월분부터 2022년도 6월분까지

부 칙

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